

공학교육혁신센터 현장실습 규정

□ 제정 : 2011. 07. 06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수원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.) 학칙 제33조의 1항의 현장실습수업(이하 "현장실습"이라 한다.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

현장실습이란 학생들에게 재학 및 방학 중 일정기간 동안 국내외 유수의 기업에서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의 전문지식을 얻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 (교육과정편성(안)) 산업체현장실습 교육과정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"산업체인턴쉽1"은 1주(40시간) 이상의 실습을 시행하며 일반선택 1학점을 취득한다.
- ② "산업체인턴쉽2"은 2주(80시간) 이상의 실습을 시행하며 일반선택 2학점을 취득한다.
- ③ "산업체인턴쉽3"은 3주(120시간) 이상의 실습을 시행하며 일반선택 3학점을 취득한다.

제4조(신청자격 및 절차)

- ① 2학년이상인 자로서 해당학기 등록을 마친 재학생으로 한다. 단, 산업체에 재직중인자는 제외한다.
- ② 국외 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국 언어사용이 가능하고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이어야 한다.
- ③ 일반선택과목으로 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및 소속학과(부)장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신청서를 해당학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선발)

- ① 총장은 본 대학교 및 현장실습기관의 선발기준에 의거 실습 분야와 실습 여건 등을 고려한 심사를 거친 후 현장실습생을 선발한다.
- ② 전항의 선발을 위해 필요시에는 실습시작 전에 해당 학부(과)장이 현장실습기관의 자격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③ 현장실습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총장의 허가 없이 현장실습을 포기하거나 휴학할 수 없다.

제6조(학점인정 절차)

- ① 일반선택에 한하여 수강신청은 소정의 절차를 걸쳐 학적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.
- ② 현장실습을 완료한 학생은 현장실습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성적인정 요청서를 해당 학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학점인정 및 성적표기)

- ① 평가반영비율은 실습기관평가서(40%), 실습종합보고서(20%), 출근상황(20%), 방문지도보고서등에 의한 지도교수 평가(20%)를 원칙으로 한다.
- ② 취득한 학점은 Pass/Reject 처리하고 평점평균(G.P.A)에는 가산하지 않으며 졸업학점에 포함한다.
- ③ 전공과목에 현장실습 또는 유사한과목이 개설된 경우 전공학점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별도로 현장실습을 하여야 한다.

제8조(현장실습대상기업)

- ① 민간부문 : 대기업, 비영리법인, 사회단체, 연구소,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기관, 중소기업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기업
- ② 공공부문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과 그 부속기관, 정부투자·출자·출연기관, 비영리 공익법인

제9조(협약사항) 현장실습협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- ①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 또는 실습(근무)계획

- ② 현장실습기간중에 학생의 보건 위생과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
- ③ 현장실습생에 대한 수혜조건(후생복지 및 실습비 등)
- ④ 기타 관련기관의 정해진 서식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서식에 따를 수 있다.

제10조(현장실습의 의무위반자조치)

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- ① 현장실습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
- ② 고의적으로 현장실습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
- ③ 고의적으로 현장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
- ④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

제11조(보칙)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등 관련 규정과 현장실습 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.

부 칙

(경과조치)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집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